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정한지방비 부담을 초과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동의절차 신설〉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1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정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동의절차 신설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7. 21.
3. 회 부 일 : 2025.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 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일정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신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의 사전협의 및 동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은 같은 항에 따라 소집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속 지방정부 위원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u> <u>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조</u>

	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생략)	제27조의3(지방재정관리위원회)(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생략)	제27조의4(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현행 제27조의3과 같음)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생략)	제27조의5(국고보조금의 관리)(현행 제27조의4와 같음)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생략)	제27조의6(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의5-----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생략)	제27조의7(지방재정영향평가)(현행 제27조의6과 같음)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 양에 따른 사무 수행) (생략)	제27조의8(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 양에 따른 사무 수행) (현행 제2 7조의7과 같음)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 리 등) (생략)	제27조의9(국고보조사업 집행 관 리 등) (현행 제27조의8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기한 5.20.)하여야 하며¹⁾,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기한 5.31.)하기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기한 5.20.)하여야 함²⁾.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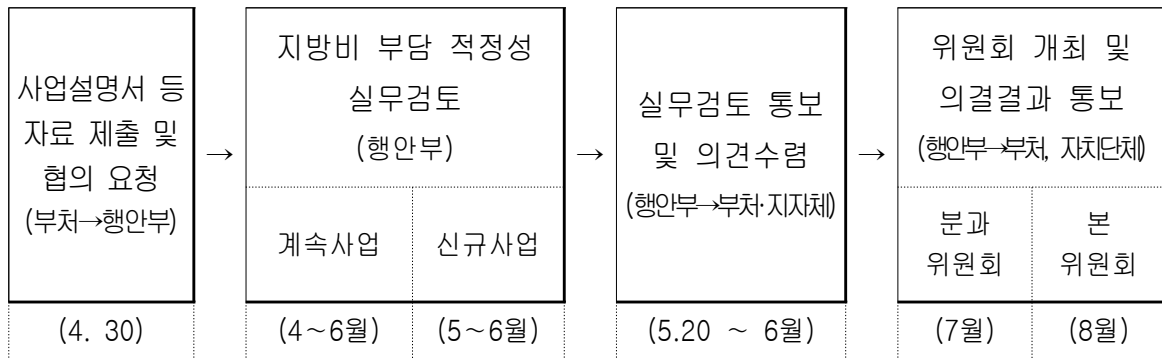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³⁾,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비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음.

<현행법상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절차>



※ 자료 : 행정안전부

이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⁴⁾.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그런데, 현행법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편성 전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⁵⁾를 소집하여 해당 회의 소속 지방정부 위원⁶⁾

4) 「지방재정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표자, 시장·군수 및 구청장 협의회 대표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대표자, 지방시대위원장 등임. 이때, 지방정부 위원은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표자, 시장·군수 및 구청장 협의회 대표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대표자 등이 될 것으로 보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지방비 부담 초래 국고보조사업 사전 절차>

구분	내용
주체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려는 중앙관서의 장
대상 사업	모든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 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10% 초과 사업
사전동의 절차 규정	①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 소집
	②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속 지방정부 위원 3/4이상 동의
	③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기재부·행안부 장관 통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속 지방정부 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회의 의장

첫째, 개정안이 설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비율인 10%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전동의 대상이 되는 지방비 부담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 수 기준 20.3%(172개), 총사업비 기준 72.7%(96.7조원)임.

<개정안에 따른 사전동의가 필요한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사업 수(개)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전체 국고보조사업	846	133.1	93.6	39.5
모든 지자체 대상 지방비 부담률 10% 초과 사업 ¹⁾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비중)	172 (20.3%)	96.7 (72.7%)	70.3 (75.1%)	26.3 (66.6%)

주 1) 최소보장적 복지사업(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 포함

2)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임

※ 자료 : 행정안전부

둘째,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원 중 지방정부 위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동의 절차가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시·도지사협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므로⁷⁾ 중앙관서

의 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보임.

또한, “지방정부 위원”이 어떠한 위원을 지칭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의결정족수(3분의 2이상 출석, 출석 과반 찬성)⁸⁾ 외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일부 위원에게만 표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인 지방재정관리위원회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사전 조정 가능하다는 점,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집은 의장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구성원 중 지방정부 위원에게만 표결권을 부여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성 및 운영)②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③ 협력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된다.

④ 의장은 협력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는 점, 절차 복잡화로 인한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우려가 있다는 점, 현재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과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